

치과 칼럼

# 임플란트 위치의 중요성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부었어요, 고름이 나와요 하시며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과에 재내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시술한 치과가 없어 지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내원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전 치과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조심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결하고자 할 때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입니다.

50대 A 씨가 집 근처 치과에서 아래턱 두 번째 큰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마취가 풀리고 나서부터 수술 부위 앞쪽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통증은 수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수술한 치과에 내원해서 수술하신 원장님과 상의를 한 후에 본원에 내원해서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내원하신 이후 진단을 위해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임플란트의 위치가 앞 치아 뿌리와 너무 근접해 있어서 수술 도중 치아 뿌리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상을 입은 치아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근관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치아에 상부 보철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려고 해도

기존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경치료 기간 역시 오래 걸리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서 다시 상부 보철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환자분한테는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다른 대안은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좋은 위치에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마취를 해야 하지만 훨씬 간단한 방법이기엔 환자분은 동의해 주셨습니다.

마취를 하고 기존에 임플란트를 제거합니다. 다시 적절한 위치에 식립하였고 원래 심었던 위치는 빈 공간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뼈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임플란트가 인접 치아의 뿌리와 떨어져서 그리고 보다 좋은 위치에 식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다음날 드레싱을 위해 내원하셨는데 환자분은 통증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을 때 확인한 결과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있었던 앞 치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A 씨의 경우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주변 치아 혹은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icheal Han D.D.S  
Harbor Implant & Cosmetic Dentistry  
TEL (714) 773-9999  
goteamhcd@gmail.com



법률 칼럼

# 601A 면제: 불법입국/불법체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최근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한분들이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실사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더라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못해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90년대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사실상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1. 승인 요건

1) 이미 승인된 청원서 (Petition)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 즉 가족초청(I-130), 취업이민 초청(I-140), 종교이민(I-360)등의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National Visa Center 절차(이민비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란 배우자와 부모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면제 신청인이 승인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지 (qualifying relatives)는 시민권자/영주권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고려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Factor 는 아닙니다.

3) 601A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증명이 가장 면제 준비에서 어려운 절차입니다. 상세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 등에 관한 증거들을 면제 신청 시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